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을 기후에너지부로 변경〉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09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을 기후에너지부로 변경	3
※ 참고자료	8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현황	8

I. 제안경위

2025년 7월 7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

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운영은 물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을 기후에너지부로 변경

개정안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소속을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
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u>환경부에</u>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 ----- ----- ----- ----- ----- <u>기후에너지부</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행한 고시

·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를, “환경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고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환경부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센터장 산하에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0명에 현원 59명이 근무중인 상황임. 종합정보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등이 있음(참고자료1).

다만, 환경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정책의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¹⁾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종합정보센터의 소속을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변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의 전문성을

1) 에너지경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2024.6.19.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EU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 기후(완화, 적응) 및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생태포용전환부), 독일(경제기후보호부), 영국(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²⁾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 현황]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행정 조직	부총리겸 경제기후보호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생태포용전환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 Net Zero) 기후변화내각위원회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본부장 총리, 부분부장 관방, 환경, 경제산업대신 (자원에너지청)
법	연방기후보호법(2019) 2021년 2023년 개정 수립추체연방정부	기후변화와 회복탄력성법	기후변화법(2008) 2019년 개정 5년단위 탄소예산	지구온난화대책추진 법(1998) 2021/2022 개정
위원 회	독립적인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 이니셔티브 보고서 작성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 프랑스 기후 고등위원회	독립적인 법정기관 기후변화위원회	각 부처 산하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 정부, 민간, 학계의 협력 촉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기후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과 위원회 개편방안(2025.4.8.)

동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향후 개편방안 및 「정부조

2) 국회 미래연구원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2025.5.)에 따르면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 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부처를 기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 프랑스, 미국, 일본의 경우 개편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7%에서 6%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법」 개정안 확정 후 이에 맞추어 개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연관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일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제2조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안 제36조제1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의 소속 변경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의 경우에도 제3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한 고시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제2211308호)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자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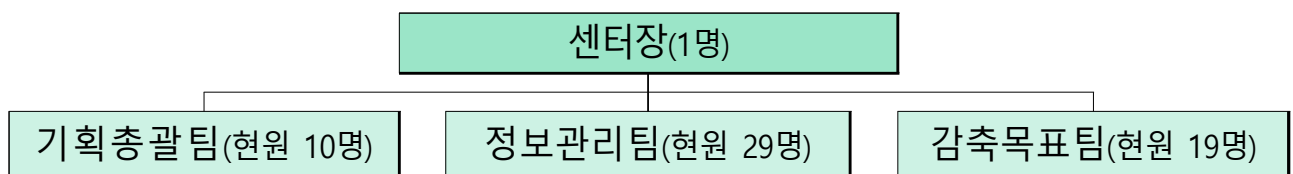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현황

□ 주요 연혁

- 2010.4.1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공포·시행
-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결정
- 2010.6.15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개소
- 2016.6.1 :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
- 2018.1.1 : 환경부 소속으로 재변경
- 2021.3.1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청사 이전(광화문 → 오송)
- 2022.3.25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센터 설립·운영 근거 법에 명시

□ 조직 및 인력 ('25.8월 현재)

- (조직) 1센터장 3팀



- (인력) 현원 59명 근무 중, 정원은 60명
- (현원/정원) 일반 공무원 25/23명, 공무원직 34/37명(전문연구원, 행정실무원)
(현원/정원, 명)

구 분	합계	소계	고공단	4급·연구관	5급·연구관	연구사	6급이하	소계	전 문 연구원	행정 실무원
총 계	59/60	25/23	1/1	3/3	7/5	9/11	5/3	34/37	31/34	3/3
기획총괄팀	11/10	6/4	1/1	1/1	1/1	1/0	2/1	5/6	3/4	2/2
정보관리팀	29/32	10/12	0/0	1/1	2/2	5/7	2/2	19/20	18/19	1/1
감축목표팀	19/18	9/7	0/0	1/1	4/2	3/4	1/0	10/11	10/11	-

□ 부서별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기획총괄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 인사·조직·예산·결산 및 국회 업무 총괄 ○ 탄소중립 관련 국제기구·단체,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협력 ○ 파리협정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및 투명성 협상 대응 등
정보관리팀	○ 국가·지역 통계 개선계획 수립 및 산정·보고·검증 지침 마련 ○ 국가 온실가스 통계 및 국가고유 배출계수 검증 ○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산정 및 분석 ○ 지역별(시·도/시·군·구)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분석 ○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산정 조사·연구 및 운영결과 분석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참여 관리 업체 배출량 정보공개 등
감축목표팀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모형 개발 및 운영 ○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부문·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지원 ○ 연도별 감축목표의 정량적 이행 현황 점검 지원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 예산 현황

○ '25년 예산은 약 9,059백만원으로 '24년 대비 15% 감소*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154백만원),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정보화)(1,455백만원) 예산 감액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4 예산 (A)	'25 예산	증감 (B-A)	%
총 계		10,658	9,059	△1,599	△15.0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5,325	5,171	△154	△2.9
①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 관리체계 구축 ※ 신기후체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및 인벤토리 품질개선 등 관련 연구용역 등 지원	2,327	1,994	△333	△14.3
②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360	309	△51	△14.2
③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지원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등 관련 연구용역 등 지원	1,851	2,175	324	17.5
④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 지원 등	787	693	△94	△11.9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정보화)		4,680	3,225	△1,455	△31.1
※ 온실가스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감축 등록부 시스템 구축 등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94	194	0	0.0
- 인건비(무기계약직), 특근매식비,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459	469	10	2.2
- 운영비, 여비 등 기관운영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					